

개정 전	개정 후
	<u>정한다)</u> <u>3.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u> <u>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u> <u>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u> <u>사용하는 경우</u>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5)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p>	<u><삭 제></u>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p>	<u><삭 제></u>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